



무형문화유산협약: 제정 10주년을 맞이하여

협약은 그 시대와 상황의 산물이다. 체결 시점에 국제사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가치와 과학적, 정치적 관점이 반영된다. 이와 동시에 협약은 국제적 인식에 영향을 주거나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며 미래의 우선과제를 결정할 수도 있다. 2003년 체결된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이 그랬다. 오늘 우리가 향유하는 문화 전통을 다음 세대로 계속 누릴 수 있게 하자는 미래지향적 의지가 담겼다.

2003년 협약의 초안은 2년 만에 완성됐지만, 이는 유네스코가 60년간 인류 유산 보호에 집중해왔기에 가능했다. 특히 30년 전부터 살아있는 전통을 무형유산으로 보호해온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그간 유네스코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1972),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전통문화 불법 이용 및 침해 방지법 모델(1985), 전통문화 및 민속 보호에 관한 권고(1989), 세계무형유산(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프로그램(1997)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논의의 장을 마련했으며 지식을 창출해 2003년 협약을 이끌어냈다*.

2003년 협약이 체결된 지 10년이 지났고, 세계적으로 적용된 지는 7년이 됐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협약의 기능, 역할, 가치를 재검토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무형문화유산 담론의 변화와 새로운 개념의 정립

협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국제적으로 통용될 용어집을 만들기 위해 핵심 용어의 의미를 깊이 있게 토론했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의 핵심 특성에 대한 심도 깊은 규정이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근본적인 의식 및 행동의 전환이 뒤따랐다.

협약이 국제사회에 미친 가장 뚜렷한 영향 중 하나는 '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란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됐다는 점이다. '전통문화'나 '관습'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쉽게 와닿지 않았다. '민속'은 종교, 식민주의, 문화적 우월주의 등과 연관되어 부정적 뉘앙스를 풍긴다고 인식되었다. '민속'은 주로 계승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시각에서 규정되는 반면, 무형문화유산은 해당 문화의 창조자와 계승자에게 규정 권한이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협약을 통해 'protection' 대신 'safeguarding'이란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점도 성과라 할 수 있다. 이 용어의 이해에는 문화적 표현물의 역동성과 관련한 여타 개념 및 그 실행가능성을 보장해야 할 필연성이 요구되었다. 그럼으로써 문화의 창조자와 계승자를 전 과정에 걸쳐 능동적 수용자로 포함시키는 절차적 접근방식을 강조한다.

'Safeguarding'은 보다 폭넓고 전체론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며, 결과와 현상이 아니라 과정과 사람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문화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권위주의적 뉘앙스를 풍긴다는 점에서 정적이고 수동적이라 할 수 있는 'protection' 또는 'preservation'과 분명히 대비된다.

목록화 및 등재

1973년 볼리비아가 세계 각국 민속예술과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조치를 유네스코에 처음 제안했을 때부터 국제민속문화유산등록부(International Register of Folkloristic Cultural Property)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후 2003년 협약이 체결되기까지 30년간 연구와 논의를 통해 등록화(registering), 카탈로그화(cataloguing), 등재(listing), 목록화(inventorying) 등 다양한 시스템의 장단점이 상세히 검토됐다. 수 세기 동안 이어진 민속학자들의 구전유산 채집 및 카탈로그 작업 외에도 1972년 협약에 따른 목록 등재 모델 등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등록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멈추지 않고 이어졌다. 물론 회의와 우려의 시선도 있었다. 목록 등재 메커니즘의 맹점에

대해 경고하는 이도 있는 반면, 국가 차원에서 더 광범위한 보호책 마련을 가능하게 해주고 살아있는 유산의 특성과 범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며 추켜세우는 이도 있었다. 협약에 의거한 각종 목록 등재는 예상대로 장점뿐만 아니라 문제점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관련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목록 작업을 통해 유산을 파악하고 규정하는 것이 더욱 폭넓은 유산 보호책의 필수 요소라는 원칙을 수립했다.

평행하는 세계: 지적 재산, 세계유산, 문화상품 및 서비스

지적 재산권 문제는 2003년 협약에서는 제외되었지만, 1950년대 초반 이래 유네스코의 문화 보존 논의에서 빠진 적이 없는 주제였다. 1970년대부터 단일 장치로 지적 재산과 살아있는 전통을 모두 보호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았다. 유네스코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수십 년간 생산적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2003년 협약에서는 무형유산 보호에 초점을 맞추기로 결정되었다. 전통 지식, 유전 자원, 전통문화 표현물/민속 등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려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노력도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으며, 곧 견고한 규범적 프레임워크가 창출되어 2003년 협약을 보완하게 될 것이다.

세계문화자연유산에 관한 1972년 협약 역시 2003년 협약이 발효된 뒤에도 계속 발전했다. 1972년 협약은 2003년 협약의 태동의 계기가 되었고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순위빨린 동시에 2003년 협약이 극복해야 할 수사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2003년 협약에 담긴 무형문화유산의 개념과 지향점은 이후 유형유산 보호에도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1972년 협약 40주년(2012년) 기념행사 주제는 '세계 유산과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사회의 역할'이었다. 지난 해 발표된 각종 협약 관련 보고서에도 세계 유산 보호 활동에서 지역사회의 참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음이 나타나 있다.

2003년 협약과 병행해 추진되고 있는 세 번째 영역은 문화 상품·서비스 분야로 2005년 협약에서 다뤄졌다. 2005년 협약은 2003년 협약과 마찬가지로 무형문화유산의 역동적 본질을 전파 및 재생산하는 데 중점을 두며 아울러 문화적 창조력을 부양하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2003년과 2005년 협약의 활동 영역이 다르고 동일한 대상에 대해 각각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문화적 표현물은 무형문화유산이면서 동시에 문화 상품·서비스이기도 한 경우가 많다. 두 협약을 모두 비준해 정책에 한꺼번에 융합시키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하나만 택하는 나라도 있다. 아무 협약도 비준하지 않은 나라도 몇 있다.

회원국의 유산 보호 활동 지원

2003년 협약은 유네스코의 전체 문화협약 가운데 전례 없이 높은 비준률을 기록했다. 지금까지 150개가 넘는 회원국이 이 협약을 비준했으며, 일부 국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장기적인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책과 전략을 수립했다. 비준을 계기로 광범위한 개발 계획에 문화 분야를 포함시킨 나라도 있다. 협약을 실행하는 과정 역시 국가마다 다르다. 어떤 나라는 인식 제고와 홍보부터 시작하고, 어떤 나라는 무형유산 목록 작업과 보호 작업을 출발점으로 삼기도 한다. 곧바로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하는 나라도 있다. 이 협약을 통해 각국은 국제적 차원의 협력관계를 수립하고, 유용한 경험을 공유하고, 협약의 국제 메커니즘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나라의 노하우를 전수 받는 기회를 얻는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및 향방

이제 10주년을 맞은 2003년 협약이 20주년, 30주년에는 어떤 양상을 띄게 될까? 피해야 할 함정은 무엇일까? 더 깊이 있게 추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기회 요인은 무엇인가? 이런 본질적 물음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파생된다.

- 무형문화유산과 지속가능한 개발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더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무형문화유산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오랜 세월에 걸쳐 검증된 환경적응 방식이나, 격감하는 자원 접근 문제를 중재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 제도 도입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 2006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2007년 유엔원주민인권선언과 같은 각종 국제 인권 협약이 2003년 협약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 2003년 협약의 이행 과정에서 성평등, 성 다양성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비중을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어떻게 하면 갈등 방지, 갈등 해소, 평화 구현,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에 있어 무형문화유산이 지금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 2003년 협약에서 언어는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가? 직접적으로 언급된 목적은 아니라 하더라도, 언어 다양성의 보호와 신장에 이 협약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2003년 협약이 옳은 방향으로 전진을 계속하여 당초 취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세계인의 기대에 부응하게 하려면 어떤 질문이 더 필요할까?

이 중 몇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이 이 저널에 나와 있다. 2013년 6월 14~16일 중국 청도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1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도 협약의 발자취를 되짚으면서 위 질문의 답을 찾는 데 집중하게 될 것이다.

세실 뒤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과장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담당 서기

*협약 웹사이트(<http://www.unesco.org/culture/ich>)에서 1973년부터 지금까지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하여 진행된 유네스코 회의 및 활동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